

19. 建設交通部 '97年度 主要 業務計劃

資料提供：建設交通部

민생과 경제안정의 초석인 부동산가격의 안정

- ◇ 집값·땅값이 앙등하면 국민생활이 불안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기간이 흔들리게 될 우려
- ◇ 집값·땅값이 조금이라도 불안하지 않도록 수요·공급 양측면에서 완벽한 대책을 시행

1. 부동산 투기로 인한 가격상승을 완벽히 차단

- 금년은 대선을 비롯해 각종 개발사업의 본격 추진, 규제완화 등으로 인해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이 잠재
 - 집값·땅값을 사전에 완벽하게 잡기 위해 투기적 가수요를 강력히 차단하는 한편,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
- 정부합동 부동산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범정부적인 강력한 투기차단시책을 강구
 - 부동산 시장동향에 대한 철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, 정부합동 단속반을 적극 가동
 - 토지거래허가제·토지세제·부동산실명제 등 각종 투기억제 수단을 총동원
 - 부동산 수급흐름에 막힘이 없도록 다양한 부동산정보를 적기에 제공
- 투기단속 활동의 강화

- 토지공사·주택은행 등을 통해 부동산가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분기별 지가상황을 읍면동에서도 세밀하게 파악
- 지가 감응지표 등 투기예고지표를 적극 활용하여 투기조짐지역을 사전에 신속히 포착
- 상시단속반(토지대책반·주택대책반)을 편성하여, 투기조짐지역의 가격 및 거래동향을 계속 감시
- 가격상승이 우려되거나 언론에 보도된 지역은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하고, 투기조짐지역은 단속반을 즉각 투입
- 부동산전산망을 적극 가동하여 투기혐의자를 사전에 색출
 - 외지인거래자·거래빈번자등 투기혐의자를 반기별로 국세청에 통보하고, 혐의가 있는 경우 검찰청에도 통보
 - 시군구에서도 투기혐의자를 적발할 수 있도록 『토지거래 프로그램』을 '97. 6월까지 개발·보급하고 주택등 건축물까지 확대
 - 개발제한구역과 대기업의 토지소유현황을 분석하여 필요시 투기억제를 위해 적절히 활용
- 주택전산망을 활용하여 투기적거래자·전세금 과다인상자 등을 파악하여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주택에 대한 투기도 철저히 차단

□ 토지거래허가제 등 투기억제 수단을 총동원

- 투기조짐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투기억제기능을 강화
 -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구역중 투기우려지역은 재지정하고, 고속철도 역세권 등 개발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신규지정
 - 토지거래 허가조건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유 휴지로 지정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
- 준농림지역내 토지의 무분별한 임식과 특기를 방지하기 위해 입지규제를 강화
 -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·숙박시설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, 50호 이상 공동주택 건설시 개발계획 수립을 의무화
- 지가급등지역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등 토지관련 세제를 투기억제에 적극 활용
 - '93년 정기과세후 부과를 중단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를 지가급등지역에 대해 부과

- 등기전에 부동산양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세무서에 신고토록 하는 『부동산양도 사전신고제』를 철저히 시행
- 종합토지세 과표를 현실화하고, 자치단체간 형평성도 제고
- 부동산실명 미전환자 부동산실명법 위반자를 적극 색출하는 등 부동산실명제를 확고히 정착

□부동산 거래 원활화

- 부동산매물에 관한 정보가 원활히 유통되지 못하여 부동산 값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
- 정상적인 가격형성을 위해, 다양한 매체수단을 활용하여 각종 매물정보의 유통·공개를 촉진
 - 건교부 등 공공기관에서 신뢰성 있는 매물정보를 파악하여 일간지 등에 제공
 - 전속중개제도를 활성화하고 부가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민간의 부동산거래 정보망을 확대
 - 주택은행·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PC통신을 통하여 매물정보를 일반국민에게 무료로 제공

□투기억제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

- 개발계획 수립이나 규제완화시책 발표시 투기억제대책도 함께 수립하여 발표
- 주택공급이나 가격·미분양·택지공급 등에 관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여 주택가격 안정심리 정착
- 언론이 객관성 있는 자료를 토대로 보도하되,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내용은 자제토록 협조

2. 충분한 물량공급을 통해 가격 안정기반 강화

가. 주택공급 확대

- '97년중 50~60만호를 건설하여 신경제기간중 285만호의 주택건설계획을 마무리하고, 주택보급율을 90%까지 제고

- 공공부문에서 공공주택 15만호·근로자주택 5만호 등 20만호를 건설하고 민간부문에서 30~40만호 건설

| | '93~'97(계) | '93 | '94 | '95 | '96 | '97 |
|-------|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-|---------|
| 계 획 | 2,850천호 | 550 | 550 | 550 | 500~600 | 500~600 |
| 실 적 | 2,487천호 | 695 | 623 | 619 | 550 | — |
| 보 급 률 | — | 80% | 83 | 86 | 88 | 90 • |

□ 금년중 총 11조원의 주택자금을 조성, 서민주택자금으로 지원

- 국민주택기금에서 4조5천억원을 조성하여 공공 주택건설 및 영세민 전세자금 등으로 지원

- 민영주택자금 약 6조5천억원을 조성하여 민영주택 건설과 구입자금으로 지원

□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

-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을 확대하고(96년 8만호 → '97년 9만호) 호당 웅자액을 상향조정(1,500~1,700만원 → 1,800~2,000만원)

-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하기 위해, 입주자 제한 폐지·분양전환시 자격제한완화 등을 추진(임대법시행령 개정, '97. 3)

□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활성화

- 재개발사업 시행시 도로·공원 등 공공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비용부담을 확대(도시재개발법 개정, '96. 12)

-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자금지원 확대방안을 강구('97. 6)

□ 주택공급에 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

- 지방(수도권·대도시 제외)의 중·대형 아파트 분양가를 폐지('96. 12)한데 이어, 소형아파트에 대한 규제완화 추진

- 민간택지의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폐지하거나 완화한 데('96. 10) 이어, 추가완화를 추진

- 수도권이외 지역에서 아파트 재당첨 제한기간을 단축
 (국민주택 : 10년 → 5년, 민영주택 : 5년 → 3년)

□ 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, 지자체의 자의적인 규제나 과다한 기부채납을 자제로
 록 지자체에 대해 행정지도

□ 주택수요의 다양화에 부응하여 아파트 물량공급 위주의 산업구조를 『다품종 소량생산』
 구조로 점진적으로 개편

□ 주택설계 및 자재의 표준화를 지속적을 추진하여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을 도모

나. 택지공급 확대

□ 주택공급의 최대관건인 택지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, 지역별 택지수급계획에 따라 공
 공택지를 적극 개발

- 금년중에 공공택지 1,140만평을 공급하고, 이중 480만평(15만호 분)을 수도권에서 공
 급

- '98년 이후 소요택지를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 택지개발예정 지구를 조기에 지정

- '98년 이후 수도권의 택지수요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2002년까지 택지 4,250만평
 (공공 2,130만평)을 개발·공급

□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택용지 가격을 인하하는 등 적극 지원

- 택지 공급가격을 지역별로 조성원가의 70~90% 까지로 인하

- 공공택지 중 일정비율(20%) 이상을 임대주택 용지로 공급

-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도 제한적인 토지수용권을 부여(임대주택법 개정, 96. 12)

□ 국민주택용 대지조성사업 등에 대해 개발부담금의 50%를 경감하여 택지공급을 촉진
 (개발이익환수법 개정, 96. 12)

전국 어디서나 고루 잘사는 지역균형발전 촉진

- ◇지방에서도 살맛이 나는 국토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 광역권과 낙후지역을 특성 있게 개발
- ◇수도권 과밀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, 동북아 중심지로 발전하도록 미래지향적으로 정비

1. 국토개발·관리의 기본방향

- 우리나라는 인구와 산업기반이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방은 경제 및 생활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
 - 국토면적의 12%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가 45% 몰려있고, 금융·행정 등 중추기능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
 - 농어촌 등 낙후지역은 생산성이 낮고 생활기반이 취약하여 인구가 매년 30만명씩 감소
- 21세기에 대비하여, 생산성 있고 경쟁력을 갖춘 국토를 체계적으로 가꾸기 위해 새로운 국토관리의 청사진을 마련
- 문민정부 들어, 지방개발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『지역균형개발법』 제정 등 제도 마련에 주력
 - 이를 바탕으로, 국토균형개발을 통한 지방화 정착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본격 추진

2. 지역자립 경제기반의 구축

가. 광역권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

□ 지방대도시권과 신산업지대를 수도권의 대응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광역권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

- 대도시권 : 부산 · 경남, 대구 · 포항, 광주 · 목포, 대전 · 청주권
- 신산업지대권 : 아산만권, 군산 · 장항권, 광양 · 진주권
- 강원지역에 광역권 추가지정을 추진

□ '94. 12월 확정된 부산 · 경남권 및 아산만권은 가덕항 · 천안 역세권 사업 등 핵심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개발효과를 기시화

□ 나머지 광역권은 상반기중 『광역권계획』을 확정하고, 강원지역은 금년중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

- 대구 · 포항권 : 포항신항 등 개발 및 대구중심의 광역도시권 구축
- 광주 · 목포권 : 대불공단 · 목포신항 등 개발로 동남아 교류기지화
- 대전 · 청주권 : 대덕 · 둔산에 연구관리기능을 부여하고, 청주에 첨단 · 정보산업을 육성
- 군산 · 장항권 : 군장산업기지 · 군장신항 개발 등 대중국 교역의 교두보로 육성
- 광양 · 진주권 : 광양항 · 율촌공단 · 진주광역 산업단지 등을 개발하여 환태평양권의 물류 · 산업기지로 육성

나. 낙후지역 및 특정지역 개발 추진

□ 생활여건이 뒤떨어진 낙후지역을 『개발촉진지구』로 지정, 지역특성에 맞추어 소득기반 및 접근교통망확충을 지원

- '96년에 11개 지구를 지정한 데 이어, 금년에는 10개 지구를 추가 지정하고, 7개 지구는 개발계획을 확정
 - 화천 · 영월, 영동, 홍성, 장수, 구례 · 곡성, 경북산악휴양형, 의령 · 합천(무주, 순창, 고창 3개는 지구만 지정)
- 매년 도별로 1개 지구씩 연차적으로 개발(도면적의 10% 까지)

- 지구당 500억원 규모를 국고에서 5년간 연차적으로 지원
 - '96년에 개발계획이 확정된 6개 지구에 대해 금년중 359억원을 지원
- 개발촉진지구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실효성 있는 지역 개발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
- 지역특화·관광 등 개발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방안 마련
 - 축제·경연대회 등 이벤트성 지역개발사업 추진방안 강구
 - 열악한 투자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 강구

□ 제주도·백제문화권 지역개발사업의 추진

- 제주도를 국제적 관광지로 육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을 현실에 맞게 보완
- 백제문화권은 백제큰길·백제연사·재현단지·진입로·옹포대교·공사 등 핵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99년까지 완료

3. 미래지향적인 수도권정비시책의 추진

- #### □ 21세기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도권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정비계획을 수립
- 1차 계획(82~96)에 이어 향후 15년간 추진될 2차 계획은 『수도권 집중억제』와 『경쟁력 확보』의 양대요구를 조화
 - 수도권 집중억제시책을 지속 추진하고, 내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서울중심의 단핵 구조를 다핵분산형 구조로 전환
 - 선진국 대도시권 수준의 광역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와 고속도로 등을 대폭 확충
 -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, 금년 3월중 계획을 확정

□ 건축물 입지 등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

- 개별사업에 대한 수도권 심의를 축소하고, 규제기준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을 제고

- 인천국제공항 등 국가사업을 위해 필요한 지역은 합리적으로 권역을 조정
- 여가·휴식공간 확충을 위해 관광지사업의 규제를 완화

□ 대전 제2행정타운 조성사업을 금년중 완료하여, 98년부터 9개 청단위 기관을 이전

편리하고 안전한 국민 생활환경의 조성

- ◇ 자동차 천만대 시대에 부응하여 교통난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, 교통안전 환경의 선진화 기반을 구축
 - ◇ 쾌적하고 특색있는 선진 도시환경을 조성하고, 건설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완벽히 보호

1. 자동차 천만대 시대에 걸맞는 교통체계 구축

가. 대도시권 교통문제의 광역적 해결방안 강구

□ 수도권 등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광역적인 계획수립·조직 등의 방안을 강구

- 광역도로·전철 등 광역교통시설의 건설과 재원 등에 대한 『광역교통계획』 수립을 추진하되 금년은 수도권부터 마련
-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에 대하여는 국가가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

- 광역교통계획을 수립·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추진

※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수립 및 기구설치를 위한 『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(의원입법)』 국회 제출(96. 12)

나. 효율적인 교통수요관리로 교통난 완화

□ 자가용 수요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전환하고 교통량을 감축·분산시키는 『교통수요관리 종합대책』을 수립·추진

□ 도심 혼잡지역에 대해 강력한 교통수요관리를 시행

- 혼잡통행료는 자동징수시스템 도입후 부과지역을 확대
- 도심 혼잡지역에 자가용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주차장설치를 제한하고, 노상주차장을 단계적으로 폐지
- 교통 혼잡이 극심한 지역에는 교통 평가를 통해 구역 단위의 대책을 수립·추진

□ 민간의 교통수요 절감운동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,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확대(50% → 70%)

다. 지하철·버스 등 대중교통체계 구축

□ 2003년까지 6대 도시의 교통체계를 도시철도 중심으로 정착시킨다는 목표 아래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

(서울 지하철 수송분담율 : 34%('96) → 50%(2003))

- 대구 1호선은 금년 7월 부분개통후 연말까지 완전 개통
- 서울 2기 2단계·부산 2호선·인천 1호선은 '98년 완공을 위한 마무리공사를 착실히 추진
- 지난해 착공한 대구 2호선·광주·대전지하철 공사를 본격 추진하고, 부산 3호선도 새로이 착공
- 자치단체에 대한 국고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

□ 대도시와 위성도시간의 대량수송체계 구축을 위해 수도권 하남과 부산권 김해 경량전철 사업을 추진

- 민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민자유치 기본계획을 변경

□ 버스가 지하철과 함께 도시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상호 보완·운행될 수 있도록 운영체

계를 개편

- 버스전용차로를 대폭 확대하여 버스의 정시성을 확보(118개 구간 455km에서 금년말 까지 143개 구간 551km로 확대)
- 버스정류소와 차량내부에 버스도착시간·노선안내정보 등을 제공하는 『버스 정보시스템(BIS)』을 구축
- 버스카드제를 광역시까지 확대하고 지하철과 호환성을 확보

□ 도시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주차시설 공급을 확대하여, 주차난에 적극 대처

- 지하철역세권에 환승주차장을 확충하고, 공원지하나 하천 등을 이용한 주차장 건설을 확대
- 주차장 특별회계를 활용하여 민영주차장에 대한 응차를 확대

□ 다양한 수송수요에 부응한 교통서비스를 제공

- 시내버스·고속버스 등 차량을 고급화하여 서비스를 제고
 - 시내버스를 고출력·냉방버스화
 - 시외버스는 35~37인승 고급버스화
 - 고속버스 장거리 노선은 세면대와 화장실 설치
- 주말 등 수송수요 변화에 따라 버스를 탄력적으로 공급
- 버스 운송업체에 대하여 업체 대형화를 유도하고, 공영차고지를 확보하는 등 경영개선을 적극 추진

라. 지능형교통체계(ITS)의 구축을 본격 추진

□ 교통수단·시설에 전자통신 등 첨단기술을 접목시킨 지능형 교통체계(ITS)를 구축하여 교통시설의 운영효율을 극대화

- 교통체증 20~30% 완화·교통사고 60% 감소 등 개선효과 막대

□ 금년 중 『ITS 기본계획』을 확정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

- 과천지역 시범사업을 금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

- 수도권의 도로정보시스템과 고속버스 주행정보 시스템의 기본설계를 실시
- ITS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학연 합동 연구개발을 추진

□ 세계최대의 교통행사인 『'98 ITS총회』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사전준비를 본격화

마. 교통안전문화 선진화 기반의 구축

□ 자동차 천만대 시대를 맞아 운전자 및 보행자의 질서의식과 교통안전 환경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

-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국가·지자체·민간단체 등을 통하여 범국민적인 교통안전 홍보 및 계몽 활동을 전개
-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사고잦은 지점을 집중개선하고, 안전시설을 정비·확충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효율화
- 태풍·폭설 등 계절별 특성에 따른 안전점검을 강화하고, 설날·추석절 등 특별수송 기간중에 철저한 안전점검 실시

□ 자동차, 건설중기 및 항공기 등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사고요인을 미연에 제거

- 자동차 안전점검항목을 확대(35개 → 41개)하고, 제작결합 자동차를 회수할 수 있는 리콜범위를 확대
- 자동차 안전성을 비교할 수 있는 신차 평가제도(NCAP)도입 방안을 강구
- 자동차 교역증대에 대응하여 안전관리제도의 국제화를 적극 추진
- 덤프트럭·콘크리트믹서 등 영업용 건설기계의 검사주기를 단축하고 운전자 정기교육을 강화
-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건설중기에 대하여 운전자를 처벌하는 외에 사고경증에 따라 사업주에 대하여도 처벌
- 항공사고 방지를 위해 자동항행감시 시스템(ADS)을 설치하는 등 항공보안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항공종사자의 자질을 향상

□ 자동차 관련 민원행정을 고객편의 위주로 개편

- 주민등록·책임보험 등과 상호연계한 종합정보망을 구축하여 자동차 관련 민원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
- 중고자동차의 선진 경매제도를 운용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, 유통질서도 확립
- 자동차 제작사의 사후관리 보증기간을 확대하고 정비업체의 사후서비스에 대한 관리 강화
- 자동차검사의 이원화에 따라 지정 정비업체의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부실검사를 방지
-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강화하여 서비스 향상
 -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해 운수단체의 공제경영업무를 개선
 - 자동차보험 의료보수 지급과정에서 발생오디는 분쟁과 민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문심사기구를 설치

2. 선진 도시환경의 조성

- 쾌적하고 자족기능을 갖춘 선진형 도시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(도시개발법 제정)
 - 택지개발촉진법·산업입지법 등 개별법에 의한 단편적인 도시개발 방식을 지원하고 종합적·체계적인 개발을 유도
 - 광역적인 도시개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준농림지역 등 도시주변지역도 개발 범위에 포함
 - 토지이용이나 건축물 배치 등을 종합 고려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『상세계획』 수립을 의무화
 - 도시개발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『도시개발기금』을 설치하고, 3섹타방식 등 사업 시행자를 다양화

- 지방화·광역화 등 도시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도시계획제도를 마련(도시계획법 전면 개정)
 - 경제·사회여건 등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권한을 지방에 이양
 - 도농통합시 신설 등 도시광역화에 따른 신시가지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가화

예정구역을 신설

- 공원 · 녹지 ·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적정하게 배치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상세계획제도를 활성화

□ 정보화시대에 대비, 지하매설물 등 각종 국토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국가지리정보체계 (NGIS)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

- 정보체계구축의 기반이 되는 지형도 전산화 작업을 98년 까지 완료
- 가스 ·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에 대한 관리체계와 지적도 전산화를 2000년까지 완료하고, 금년에는 시범사업을 완료
- NGIS 구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『국가지리정보관리법』 제정을 추진

□ 개발제한구역내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하되, 부동산투기와 환경훼손을 최소화

- 자녀 분가에 따른 주택마련을 위해 주택증축 범위를 확대
 - 현재 60평까지 허용하던 것을 원거주민에 한해 3층 이하 90평까지 허용하되, 1세대 30평의 분할등기를 허용
-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복지시설 허용범위를 확대
 - 체육관 · 테니스장 등 생활체육시설, 도서관 · 문예회관 등 문화시설, 수퍼마켓, 농 · 수축산물공판장 등 판매시설, 은행, 병원시설, 신탁회사 · 보험사무소, 사립고등학교

※ 부동산투기와 환경훼손이 없도록 규제완화 대상지역을 면적의 2/3가 개발제한구역인 시 · 군 · 구 등에 한정

3. 시설물 안전사고 및 부실공사 방지

□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, 공동주택 · 극장 등 민간 건축물에 대하여도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

- 주요 시설물(10,624개소)에 대한 관리주체의 안전점검실태를 재확인하여 부실점검에 대해 강력히 사후조치
- 아파트 입주민 등의 안전관리 의식제고를 위하여 『자체 안전점검 요령』을 배포

□ 도로 · 철도 등 우리부 소관 시설물(15,567개소)에 대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

– '96년 점검결과, 위험 시설물 274개소에 대하여 연말까지 개 · 보수 완료

– 개 ·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는 특별법 대상시설물로 지정,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

□ 신뢰할 수 있는 안전진단 실시기반을 구축

– 안전진단의 기술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, 선진국의 용역업체도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지정

– 허위 · 부실 안전진단에 대하여 시설안전기술공단 등 전문기관의 검증제도를 마련

□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 체계를 마련

– 안전진단 종사자 · 진단기관 등에 대한 D/B화를 추진하여 관리를 강화하고, 관리주체 · 일반국민 등에게 정보를 제공

□ 주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회 자체점검 실시를 의무화하고, 전문요원에 의한 확인점검을 실시

– 점검결과 지적사항의 경중에 따라 부실별점 부과 · 재시공 등 강력히 조치

□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다중 이용시설이나 부실 우려가 높은 저가 낙찰공사에 대하여는 집중점검체제를 구축

– 부실요인이 많은 민간공사는 지자체에 의한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고, 확인점검도 병행 실시

– 발파 · 지반굴착 등 건설공사로 야기되는 인근 건축물에 대하여도 안전점검을 실시

□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

– 공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공사에 대하여는 국제규격(ISO)에 의한 『품질보증 계획』을 수립토록 의무화

– 철강구조물의 경우 특정한 설비와 인력을 갖춘 공장에서만 생산 · 제작토록 하는 『공장인증제』를 시행

시장개방에 대응한 건설산업의 체질 강화

- ◇ 규제와 보호속에서 성장한 건설산업의 체질을 개방과 경쟁시대에 걸맞게 제도
 - 관행 · 의식 등을 선진화
- ◇ 작년에 건설산업기본법 등 제도의 틀을 마련한데 이어 금년은 제도의 선진화
 - 개술개발 촉진 등을 적극 추진

1. 건설제도의 선진화

- 대규모 복합공사의 기획 · 설계 · 감리 · 시공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『건설사업 관리제도(CM)』를 활성화
- 발주자 우위의 계약규정이나 불명확한 규정 및 시방서를 정비하여 건설 관련 주체간의 권리 · 의무관계를 명확화
- 건설분쟁의 증가에 대비하여 건설분쟁조정기구를 확대
- 도급한도액제도를 『시공능력공시제』로 전환하여 기술 · 품질 · 안전 등 질적요소를 반영하는 업체 평가기준을 마련
- 건설업체별 신용도에 따라 보증 · 융자 등을 차등화 하는 신용평가제도를 확대하고, 선진국형 공사이행보증제도를 도입
- 건설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건설전과정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는 『건설정보 통합전산망(건설 CALS)』을 구축

2.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

□ 경쟁력제고의 관건인 건설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는 목표 아래 고부가가치 기

술분야를 중점 육성

- 설계·감리 등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 분야를 적극 육성
 - 가격위주에서 기술능력위주로 업체 선정방식을 개선
 - 공항 등 대형복합공사에 전문분야별 감리업체의 공동 도급을 유도
- 『설계·시공 일괄 입찰방식(Turn-Key)』을 확대하여 기술개발을 적극 유도
- 신소재·폐자재활용 등 실용화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, 산·학·연 공동연구를 지원(97년중 81억 원 지원)
- 민간업체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설계분야에도 『기술개발 보상제도』를 확대

□ 건설원가를 절감하고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설자재 산업을 육성하고 자재 표준화를 적극 추진

- 106종의 건자재를 2001년까지 국제표준화하고 생산업체에 자금지원(97년 200억 원)
- 공동주택과 공공건축물에 우선적으로 표준화를 추진하여 민간건축물에 확대

□ 양질의 건설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, 인건비 절감과 견실시공을 촉진

- 실제 시공에 참여하는 십장 등을 적극 육성하여 책임시공을 도모
- 건설기능공 직업훈련원을 설치하고, 『건설근로자 복지제도』를 시행
- 기술자 교육훈련을 내실화 하고, 개인별 경력관리를 강화

□ 건설시장개방과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자생력을 강화

- 대형 건설업체와 중소업체간의 역할 분담체계를 구축
 - 대형업체는 건설사업관리능력을 배양하고, 중소업체는 전문화를 통하여 건설공사의 시공능력을 제고
 - 대기업과 중소업체간에 공동도급이나 인력·기술개발 등 협력 관계를 강화
- 지방중소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화
 - PQ공종을 축소하고, 중소업체와 공동도급시 PQ가점을 부여

- 지역제한입찰제 대상금액을 상향조정(20억 원 → 30억 원)
- 제한적 최저가 낙찰기준을 상향조정(88% → 90%)
- 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하고,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

3. 해외건설 진출의 확대와 부가가치 제고

□'80년대 중반 이후 침체되었던 해외건설이 '96년에 100억불대를 수주한데 이어 금년에도 활황이 지속될 전망

□ 선진국·동유럽 등 새로운 시장으로의 다변화를 적극 추진

- 미국·일본 등 선진국과 민간차원의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선진국의 조달제도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
- 체코·폴란드 등 동구권에 민·관 합동조사단을 파견
- 새로이 부각되는 서남아지역 등에 대한 건설외교를 강화

□ 개발형 공사와 용역분야의 진출을 확대하고 기자재 수출을 늘려 해외 건설의 부가가치를 제고

- 수익성이 높은 개발형 공사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해외투자 제한규정을 완화하고 민간투자기금의 설립을 추진
- 국산 기자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, 자재사용을 사전에 결정하는 설계분야의 진출을 적극 지원
 - 유망프로젝트에 대한 KOICA(한국국제협력단) 등의 무상 자금 지원을 확대
- 해외건설인력의 소득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등 고급기술자 및 관리직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

[주택회보]